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 종결 무변론(피고2, 3, 4, 5, 6에 대하여) 2016. 1. 13.(피고1, 7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에게, 충주시 I 임야 192,198㎡ 중, 피고 C은 3/11 지분, 피고 D은 2/11 지분, 피고 E은 2/11 지분, 피고 F은 1/11 지분, 피고 G은 1/11 지분에 관하여, 1985. 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 피고 H,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게 충주시 I 임야192,198㎡(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5. 11. 27. 접수제26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1/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1/11 지분에 관하여 1985.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5. 11. 25. J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남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J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피고 B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위 피고들을 포함한 매도인 J의 상속인들에게 남아 있고, 그들은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위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의 표시'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H,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J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접수 제26740호로 1985.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처남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J가 1999. 12. 1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C이 3/11 지분, 그의 자녀들인 K, 피고 D, 피고 H, 피고 E이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고, K이 2011. 4월경 사망하여 그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이 각 1/2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5. 11. 25. J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남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J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피고 B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J의 상속인들에게 남아 있고, 그들은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 피고 H에 대한 청구

매도인 J의 상속인 피고 H은 이 사건 임야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J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J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자사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